



공지사항

공고 및 고시

◎ 산업자원부 공고 제1998-15호

공업발전법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1998년도 산업기반기금운용 관리요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98년 3월 21일
산업자원부장관

1998 산업기반기금운용 · 관리요령

I. 부문별 지원규모

(단위 : 백만원)

지 원 부 문	지 원 규 모
1. 생산성향상 및 고부가가치화	128,600
- 생산성향상	58,500
- 고부가가치화	33,100
- 신기술보급	37,000
2. 유통합리화	77,000
- 유통정보화	6,000
- 공동집배송단지건립	29,000
- 물류표준화	18,000
- 물류공동화	14,000
- 집배송센터건립	10,000
3. 환경친화적산업기반조성	46,000
- 청정생산시설 및 환경설비 투자	39,000
- 환경설비생산 지원	7,000
4. 제조업지원기반구축	17,000
- CALS/EC체계 도입 구축	10,000
- 제조업지원서비스업 육성	7,000
5. 산업단지활성화	73,000
- 조건부·무등록공장 지원	50,000
- 산업단지합리화	23,000
6. 대환사업	50,000
계	391,600

II. 부문별 용자대상 및 취급기관

1. 생산성향상 및 고부가치화 사업

가. 용자대상

아래 각호의 1에 소속된 자로서 시설개체, 설비 자동화, 공정표준화, 제품개발 등을 통해 생산성향상 및 고부가가치화를 추진하는 기업

1) 생산성 향상

- 신발, 섬유(염색가공 포함), 소형가전, 생활용품 등 구조조정이 필요한 산업에 속하는 기업
- 금형, 공구, 용접, 센서 등 산업기반조성에 기여할 수 있는 산업에 속하는 기업
- 정부의 전자제품표준화 계획에 의해 변경된 KS 규격에 맞는 표준전자제품 생산을 위해 설비를 개체하는 기업

2) 고부가가치화

- 자기상표 및 디자인개발로 고부가가치화를 추진하는 섬유, 조명기기, 소형가전기기, 신발, 생활용품 등의 관련업체
- 포장재질개발, 포장표준화, 포장디자인, 포장자동화 등을 통해 고부가가치화를 추진하는 포장전문업체

3) 신기술보급

- 산업자원부에서 고시한 자본재전략품목 중 개발완료품목과 사업화품목을 생산하고자 하는 기업
- 정부에서 인증한 EM, NT, GR마크를 획득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

- 기타 특허·실용신안 취득기술을 활용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

나. 취급기관

- 1) 한국신발산업협회 : 생산성향상사업 및 고부가가치화사업중 신발
- 2) 한국섬유산업연합회 : 생산성향상사업 및 고부가가치화사업중 섬유
- 3) 한국센서연구조합 : 생산성향상사업중 센서
- 4) 한국생활용품시험연구원 : 생산성향상사업 및 고부가가치화사업중 생활용품
- 5) 한국전기용품안전관리협회 : 생산성향상사업, 고부가가치화사업 및 신기술보급사업중 소형가전
- 6) 한국전기공업진흥회 : 생산성향상사업중 용접, 고부가가치화사업중 조명기기, 신기술보급사업중 전기
- 7) 한국금형협동조합 : 생산성향상사업중 금형
- 8) 한국공구공업협동조합 : 생산성향상사업중 공구
- 9) 한국표준협회 : 생산성향상사업중 전자제품표준화
- 10) 한국포장협회 : 고부가가치화사업중 포장
- 11) 한국전자산업진흥회 : 신기술보급사업중 전자
- 12) 기계공업진흥회 : 신기술보급사업중 자본재, GR마크 분야
- 13) 산업기술정책연구소 : 신기술보급사업중 특허기술 등 기타 분야

2. 유통합리화사업

단지를 건립하는 사업

가. 용자대상

아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유통사업자, 제조업자 및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사업내용상 물류효율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자

1) 유통정보화

- 판매시점정보관리, 자동 수·발주, 전자문서 교환 등 유통정보화시스템 관련 기기를 도입하는 사업

2) 공동집배송단지건립

- 유통사업자 또는 제조업자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유통산업발전법령에 의하여 집배송

3) 물류표준화

- 유닛로드시스템통칙(국립기술품질원 고시 제 1995-909호, '95. 12. 18)에 의하여 정해진 일관수송용 표준규격의 장비를 도입하는 사업

4) 물류공동화

- 물류효율화를 위하여 제조업체 또는 유통업체가 공동으로 수·배송, 보관 및 물류정보망 구축 등의 물류공동화사업을 추진하거나 물류전문업체가 물류공동화사업을 수탁받아 물류업무를 대행하는 사업

5) 집배송센터건립

- 유통사업자가 집배송센터를 건립하는 사업

나. 용자대상 시설

사업명	시설내역	비고
유통정보화	POS, EDI, EOS시스템 등	
공동집배송단지 건립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별표 1)에 정한 집배송단지 시설 및 도소매 단지	
물류표준화	팔레트, 팔레타이저, 운반용기, 포크리프트트럭, 팔레트트럭, 켄베이어, 크레인용 팔레트행거, 무인운반차, 랙, 자동창고, 트럭·트레일러, 화물컨테이너, 철도화차	유닛로드시스템통칙 에 의하여 T11형 표 준팔레트와 정합성을 갖는 장비
물류공동화	집배송센터, 정보시스템, 수배송차량, 자동창고시스템 등	
집배송센터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별표 1)에 정한 시설을 갖춘 집배송 시설	

※ 단, 공동집배송단지, 물류공동화, 집배송센터 사업은 사업부지가 확보된 경우에 한함.

다. 취급기관 : 중소기업청

부문

3) 산업기술정책연구소 : 제조업관련 서비스업의 엔지니어링 부문

3. 환경친화적 산업기반조성

가. 응자대상

5. 산업단지 활성화

1) 청정생산시설 및 환경설비투자

가. 응자대상

-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청정생산시설 및 환경설비, 산업자원부장관이 「산업환경실천과제」로 고시하는 시설 등을 투자하려는 기업, 조합 및 공업단지

1) 조건부·무등록공장 지원

- 적법지역으로 이전을 추진하는 조건부·무등록 공장으로서 해당 시·군·구의 이전대상으로 확인된 기업

2) 환경설비생산 지원

2) 산업단지 합리화

- 환경설비를 생산하기 위하여 시설개체, 자동화 등을 추진하는 기업
- ※ 단, 1차 지원대상은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산업환경실천과제」중 청정생산시설에 한함

- 「산업단지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공장, 산업단지 입주업체로서 노후시설개체 및 업종전환을 추진하는 기업

나. 취급기관

나. 취급기관 : 한국산업단지공단

6. 기술담보사업

1) 기계공업진흥회 : 염색공단 폐수처리 시설을 제외한 모든 업종

가. 응자대상

2) 한국섬유산업연합회 : 염색공단 폐수처리시설 지원에 한함

동 운용·관리요령상 각 해당사업의 응자대상에 속하는 기업(다만,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투자액이 5% 이상이거나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의 벤처기업중 비상장중소기업을 우선대상기업으로 하며,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에 한함)

4. 제조업지원 기반구축 사업

가. 응자대상

1) CALS/EC체계 도입·구축 : CALS/EC체계를 도입하고자 하는 기업

나. 취급기관 : 동 운용·관리요령상 각 해당사업의 취급기관

2) 영화진흥공사 : 제조업관련 서비스업의 영상

다. 기술평가기관 : 산업기술정책연구소

산업기반기금(구 공업발전기금)의 용자사업자로서 '98년도중 원리금 분할상환 예정자(단,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한함)

7. 대환사업

가. 용자대상

나. 취급기관 : 각 취급은행

Ⅲ. 용자조건

1. 생산성향상 및 고부가가치화 사업

용자금리	용 자 기 간	동일인당 한도액	용자비율	자금의 지원범위
연 8.5%	생산성향상 및 신기술 보급 : 8년이내 (3년거치 5년분할상환) ----- 고부가가치화 : 5년이내 (2년거치 3년분할)	20억원 이내	소요자금의 100% 이내	1) 시설 및 기자재 구입비 2) 공정설치비 3) 제품개발비(생산성향상 제외) 4) 운전자금(지원액의 30% 이내이며, 고부가가치화 사업은 전액을 운전자금으로 지원 가능) 5)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자금

2. 유통합리화사업

용자금리	용자기간	동일인당 한도액	용 자 비 율	자금의 지원범위
연 8.5%	8년이내 (3년거치 5년 분할상환)	유통정보화 : 1억원이내 (단, 공동유통정보시스템 구축시 5억원 이내) 공동집배송단지 :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함 물류표준화 : 10억원이내 물류공동화 : 50억원이내 집배송센터 : 10억원이내	사업비의 100% 이내 기반공사비 및 건축비의 30%이내 사업비의 50%이내 사업비의 50%이내 (단, 부지매입비 제외) 기반공사비 및 건축비의 50%이내	1) 사업비 2) 건축비 3) 기반공사비 4) 운전자금(지원액의 30%이내) 5)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자금

3. 환경친화적 산업기반 조성사업

융자금리	용 자 기 간	동일인당 한도액	융자비율	자금의 지원범위
연 8.5%	8년 이내 (3년거치 5년 분할상환) ※ 단, 염색공단 폐수처리시설은 10년(3년거치 7년분할상환)	30억원 이내 (단, 염색공단 폐수처리시설은 제한 없음)	소요자금의 100% 이내	1) 시설 및 기자재 구입비 2) 공정설치비 3) 염색공단 폐수처리시설 확충비 4) 운전자금(지원액의 30% 이내) 5)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자금

4. 제조업지원 기반구축

융자금리	용 자 기 간	동일인당 한도액	융자비율	자금의 지원범위
연 8.5%	〈CALS/EC 및 영상〉 8년 (3년거치 5년분할상환)	20억원 이내	소요자금의 100% 이내	〈CALS/EC 및 영상〉 1) 시설 및 기자재구입비 2) 공정설치비 3) 운전자금(지원액의 30% 이내) 4)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자금
	〈엔지니어링〉 5년 (2년거치 3년분할상환)			〈엔지니어링〉 1) 기술지도 및 도입비 2) 위탁개발비 3) 시험검사비(감리비) 4) 시설 및 기자재구입비 5) 인건비(지원액의 30% 이내) 6)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자금

5. 산업단지 활성화

융자금리	용 자 기 간	동일인당 한도액	융자비율	자금의 지원범위
연 8.5%	8년 (3년거치 5년분할상환)	20억원 이내	소요자금의 100% 이내	1) 공장건축비 2) 공장구입·입차보증금 3) 공장 개·증축비 4) 시설 및 기자재구입비 5) 운전자금(지원액의 30% 이내) 6)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자금

6. 기술담보사업

융자금리	용 자 기 간	동일인당 한도액	융자비율	자금의 지원범위
연 9.0%	5년 (2년거치 3년분할상환)	각 해당사업의 한도액과 동일	각 해당사업의 융자비율과 동일	각 해당사업의 지원범위와 동일

7. 대환사업

융자금리	용 자 기 간	동일인당 한도액	융자비율	자금의 지원범위
연 10.0%	6개월	'98년 원리금상환액의 100% 이내	소요자금의 100% 이내	산업기반자금 원리금 상환 연기를 위한 운전자금

Ⅳ. 신청·선정 및 의무사항

1. 지원신청

가. 신청기한 : 취급기관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함

나. 신청·접수기관 : 각 사업별 취급기관

다. 취급은행 : 관리은행과 산업기반기금의 대여 및 운용에 관한 약정을 체결한 한국산업은행, 장기신용은행, 중소기업은행, 국민은행, 농협, 수협, 축협,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시중은행 및 지방은행

라. 신청서류 :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취급기관 소정양식) 1부

2. 사업자 선정

가. 취급기관의 장은 사업의 내용, 설치시설의 중요도, 생산기여도 등 자체 심사기준에 따라 사

업자를 선정한 후 산업자원부장관에게 기금을 융자받을 수 있는 사업자로 확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나. 각 사업별 취급기관의 장은 기금운용심의회를 거쳐 부문별 융자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유통합리화사업 제외)

3. 신청자 의무사항

가. 대출완료기한

기금을 융자지원 반기로 확정된 자(이하 “융자사업자”라 한다)는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산업자원부장관이 위임하는 자의 기한연장 조치가 없는 한 확정 통보후 운전자금은 3개월, 시설자금은 6개월 이내에 대출을 완료하여야 한다(단, 유통합리화사업은 10개월).

나. 수수료 납부

융자사업자(유통합리화사업의 융자사업자는 제외)는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정의

수수료를 취급기관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급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 목적외 사용금지

부 칙

기금을 용자받은 자(이하 “용자사업자”라 한다)는 그 용자받은 자금을 지정된 용도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

라. 구분계리

기금사용자는 해당자금을 타자금과 구분계리하여야 한다.

보고의무

기금의 사용자는 산업기본기금운용규정 제21조에 정하는 내용의 보고사항을 정해진 기일내에 취

- ① 이 공고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1996년도 기존사업은 1998년 1월 1일부터 다음 각호와 같이 용자금리를 조정한다.
 - 1. 생산성향상 및 고부가가치화 : (현행) 6.5% → (변경) 8.5%
 - 2. 유통합리화 : (현행) 8.0% → (변경) 8.5%
 - 3. 중소기업기반조성 : (현행) 8.5% → (변경) 12.0%
- ③ 1997년도 기존사업은 1998년 1월 1일부터 다음 각호와 같이 용자금리를 조정한다.
 - 1. 기술담보사업을 제외한 사업 : (현행) 6.5% → (변경) 8.5%
 - 2. 기술담보사업 : (현행) 7.5% → (변경) 9.0%

